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 위임 인용법률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라. 별표 사항의 근거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청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

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 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에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별표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6호서식]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관리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구분	자원명
1. 관리 대상 물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관리 대상 업체	가.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나. 「방송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아. 「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 및 방송통신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지정 범위	지정 기준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승인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자가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가통신설비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위성방송사업자
5.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 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8. 정보통신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9.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10.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 및 방송통신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구분	자원명
1. 관리 대상 물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관리 대상 업체	가.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나. 「방송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아.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 및 방송통신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지정 범위	지정 기준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승인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자가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가통신설비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위성방송사업자
5.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 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8. 정보통신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9.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10.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 및 방송통신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주소:

업체명 및 대표자(또는 소유자) 성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물자의 품목	규격·구조 및 등록번호	단위	수량	임무고지 내용			임무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사용기관 (인수기관)	인도 및 인수 장소	동원일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

작 인

..... (자르는 선) (간인)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임무 내용	임무 수행 장소	사용기관(인수기관)
동원일	동원방법	임무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 사용 [] 통제운용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

작 인

..... (자르는 선) (간인)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

일련 번호	업체명	주 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물자의 품목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임무고지 내용			연월일 부터 연월일 까지	확인
								임무의 내 용	사용기관 (인수기관)	인도 및 인수장소		
						- 14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일련 번호	지정일시 및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소재지	사업내용	임무고지 내용		임무기간
						임무내용	사용기관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비촉명령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품명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비촉 장소	비촉 기간	비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를 비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자르는 선 -----

제 호 비촉명령서 수령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령인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수령일	수령 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안 내 사 항

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규격, 수량, 장소, 기간에 따라 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다.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업체명				대표자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비축장 소	당초					
	이전 후					
이전 사유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유효기간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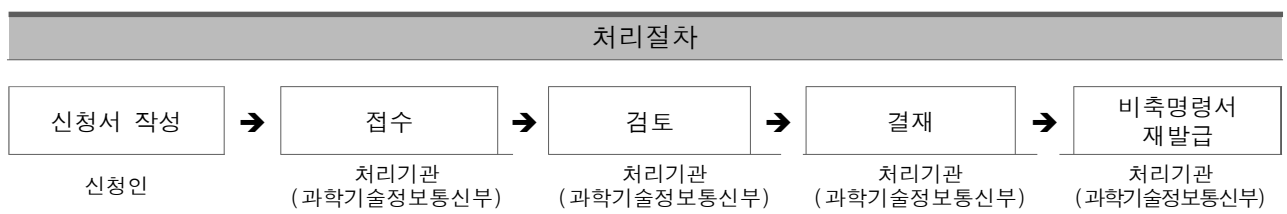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축물자 관리기록부

1. 비축물자 현황

물품명		형명	
기기번호		제작번호	
제작연도		설치연도	
내용연수		보관책임자	
주요 구성품			
품명	단위	수량	주요성능 또는 기기제원

2. 비축물자 사용내역

사용기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근거	비고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제 호

기관(업체)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

(년)

참 조 :

발 신 ㉠

제 목 : 비축물자 실태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1. 비축물자 총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전년도 말 보유		연도계획		연도실적		총 보유		다음 연도 계획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 비축물자 보관 장소별 현황

종류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장소명			
					보관장소명	주소	보관장소명	주소

3. 비축물자 보관·저장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 규모				예산 규모		소재지
	대지(㎡)	건평(㎡)	구조물	부대시설	시공기간	시설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u>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u>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비상대비</u> <u>자원 관리법</u>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비상대비에</u> <u>관한 법률</u> ----- -----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 위) 「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u> 」 (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항에 따 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 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u> 」 (----- -----) ----- ----- ----- -----.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 항 및 「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u> <u>행령</u> 」 (이하 “영”이라 한다) 제9 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 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 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u> <u>령</u> 」 (이하 “영”이라 한다)----- ----- ----- ----- ----- -----.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5. 「<u>정보통신산업 진흥법</u>」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1. (생략) 2. (생략) 가.~나. (생략) 다. 「<u>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사. (생략) 아. 「<u>정보통신산업 진흥법</u>」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자. (생략)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소프트웨어 진흥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사. (현행과 같음) 아. 「<u>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자. (현행과 같음)
[별표2]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4. (생략)	[별표2]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4. (현행과 같음)

5. 소프트웨어사업자 ○ 「<u>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u>」 제 24조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5. 소프트웨어사업자 ○ 「<u>소프트웨어 진흥법</u>」 제5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6.~8. (생략)	6.~8. (현행과 같음)
9.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u>정보통신산업 진흥법</u>」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9.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u>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연 락 처	(044) 202 - 4383